

스이타시 다언어 원스톱 상담 센터

정액감세부족금급부금 -10 월 31 일까지-

定額減税補足給付金（不足額給付）についてー10月31日（金）までに申請ー

2024 년분의 소득세 · 주민세 · 정액감세(소득세 · 주민세)의 금액이 확정되어 이미 받은 정액감세급부금이 (최초정액급부금)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추가로 급부금을 지급합니다. 부족분은 '부족액급부Ⅰ', '부족액급부Ⅱ'로서 지급합니다.

<부족액급부Ⅰ>

■ 대상자

- ① 2025 년 5 월 29 일 시점에 스이타시의 2025 년도 개인주민세과세대장에 이름이 있는 분
- ② 2024 년도분의 소득세 · 주민세, 정액감세(소득세 · 주민세)의 금액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이미 지급받은 정액감세조정급부(최초급부)

■ 급부액

2025 년 5 월 29 일 시점의 정보로 계산한 '원래급부액'이 이미 지급된 '최초급부액'보다 많은 경우, 그 차액(1 만엔 단위)를 추가로 급부합니다.

<부족액급부Ⅱ>

■ 대상자

2025 년 1 월 1 일에 스이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다음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자

- ①세제상의 부양가족이 아닐 것

※전업종사자(백색 및 청색, 자영업자의 가족 및 친족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에만 종사하는 자)이거나 '합계소득액이 48 만엔을 초과하고 있지만 공제 등으로 주민세소득 균등분할이 비과세인 자가 대상이 됨.

- ② 2024 년분의 소득세와 2024 년도의 주민세소득균등분할 모두가 비과세(=정액감세전 세액이 0 엔)인 자

- ③ '저소득세대를 위한 급부금'(2023 년도 7 만엔, 2024 년도 10 만엔)의 대상세대가 아니었던 자

■ 급부액

원칙 4 만엔(2024 년 11 월 1 일 시점에 일본외의 국가에 있었던 경우에는 3 만엔)

※이미 '2024 년도 최초급부금'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대상의 3 만엔으로부터 '2024 년도 최초조정급부'의 금액을 뺀 금액

■ 신청절차

확인서와 신청 절차를 동봉한 우편 또는 [온라인](#)이 가능합니다. 확인서가 도착하지 않은 분은 개별문의 필요

■홈페이지(정액감세급부금에 관하여, 구글 자동번역)

<https://www.city.suita.osaka.jp/kenko/1018735/1028381/1039166.html>

■ 문의처

담당부서 복지부 생활복지실(福祉部 生活福祉室)

급부금콜센터 0120-938-208(일본어만 제공)

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[스이타시 다언어 원스톱 상담 센터](#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